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72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대상(안 제3조)
- 나.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안 제4조)
- 다.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 라. 화재 발생시의 신고 및 복구비 지급(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1. 4. 20. ~ 21.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반영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복구비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및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평창군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평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2.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제4조(지원기준) 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반소: 300만원(소실이 30%이상 70%미만인 때)
 3. 부분소: 100만원 이하(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화재 원인이 본인 및 타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4.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

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비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화재피해신고서

(앞쪽)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내역

※소방서 화재증명원 필수 첨부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시설 피해	시설명		
	피해(소실)면적		
	피해 금액		
	피해 구분		
	피해 원인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창군수가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창군수가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최근 3년간('18년~'20년) 관내 주택화재 피해 발생건수는 총 73건이며 연 평균 24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음.

그 중 복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건수 및 지원 금액은 연 평균 17건, 약 3,060만원으로서 위 조례 제정 시 실제 복구비 지원 소요 금액은 연 최대 5,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2019